



물질안전보건자료 (Material Safety Data Sheet)

제품명	Hiprene M710		
CAS No.	RTECS No.	UN No.	EC No.
9010-79-1			
목록번호	최초 작성일자	최종개정일자	작성부서
PP0042	2008-07-25	2014-01-10	폴리머기술연구팀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Hiprene M710

(이명 : 하이프린 M710)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 권고 용도 : 시트, 식품용기

○ 사용상의 제한 : 자료없음

다. 제조자/공급자/유통업자 정보

○ 공급회사명 : GS칼텍스주식회사

○ 주소 :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8 (역삼동)

○ 정보제공서비스 또는 긴급연락 전화번호 : 1544-5151

○ 담당부서 : 고객센터센터

2. 유해 위험성

가. 유해 위험성 분류

자료없음

나. 경고 표지 항목

○ 그림문자 : 자료없음

○ 신호어 : 자료없음

○ 유해 위험 문구 : 자료없음

○ 예방조치문구

- 예방 : 자료없음

- 대응 : 자료없음

- 저장 : 자료없음

- 폐기 : 자료없음

다. 유해 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 위험성

○ NFPA

- 보건 1
- 화재 1
- 반응성 0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관용명	CAS 번호	함유량(%)
에틸렌프로필렌공중합체	1-프로펜, 공중합체 에 텐함유	9010-79-1	100%

4. 응급조치 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 때

화학물질 눈 접촉시 15분 이상 많은 양의 물로 씻어내시오.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화학물질에 오염된 의류와 신발은 다시 사용하기 전에 세탁하십시오.

화학물질에 오염된 의류와 신발을 벗기고 상처부위를 15분 이상 비눗물로 씻어내시오

다. 흡입했을 때

노출로 인한 영향이 나타나면 환자를 비오염지역으로 옮기시오.

호흡이 없으면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즉시 의사 등의 도움을 받으시오.

라. 먹었을 때

많은 양의 화학물질을 섭취한 경우 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바.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자료 없음

5. 폭발 · 화재시 대처방법

가. 적절한(및 부적절한) 소화제

- 적절한 소화제 : 물, 이산화탄소, 분말 소화약제, 일반적인 포말
- 부적절한 소화제 : 자료없음
- 대형 화재시 : 일반적인 소화약제를 사용하거나 미세한 물분무로 살수하십시오.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 열분해 생성물 : 탄산화물, 알데하이드, 탄화수소류, 케톤류, 탄화수소가스
- 화재 및 폭발 위험 : 경미한 화재의 위험이 있음
인화성

다.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 위험없이 할 수 있으면 용기를 화재 지역으로부터 이동시킬 것
- 누출된 물질에 고압 물줄기를 뿌려 비산되지 않도록 할 것
- 추후의 처리를 위하여 제방을 축조할 것
- 주변화재에 적응한 소화제를 사용할 것
- 물질 자체 및 연소 생성물의 흡입을 피할 것
- 바람을 안고 앓도록 하고 저지대를 피할 것

6. 누출사고 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

- 누출 지역을 격리 조치하고 관계지 이외인의 접근을 통제하십시오.
-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인력의 경우 누출 지역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 상수도나 하수도 시스템에 격리된 곳에 저장하십시오
- 추후 처분을 위하여 누출된 물질을 적절한 용기에 옮겨 수거하여 처리하십시오.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대기 : 자료없음
- 토양 : 자료없음
- 수중 : 자료없음

다. 정화 또는 제거방법

- 소량 누출시 : 자료없음
- 다량 누출시 : 자료없음

7. 취급 및 저장방법

가. 안전 취급 요령

-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피하십시오.
- 적절한 개인용 위생습관, 즉 제품을 취급한 후 깨끗이 씻는 습관 등을 독려하십시오.

나. 안전한 저장 방법

- 가압, 절단, 연마, 가열등의 물리적인 충격을 피하십시오.
- 밀폐용기에 저장하십시오.
-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저장하십시오.
-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법규, 규정에 의하여 저장, 사용하십시오.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 산업안전보건법 : 자료없음
- ACGIH 규정 : 자료없음
- OSHA 규정 : 자료없음

- NIOSH 규정 : 자료없음
- AIHA 규정 : 자료없음
- 생물학적 노출기준: 자료없음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국소배기장치등의 환기 장치를 설치하고 적정 제어 풍속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시오.
 폭발 위험이 있는 농도일 경우에는 방폭 설비가 있는환기장치를 설치하시오.
 해당 노출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시오.

다. 개인보호구

- 호흡기 보호:
 호흡용 보호구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검정("안" 마크)을 필하시오.
 산소 농도가 19.5% 미만으로 떨어질 때 NIOSH/MSHA 승인한 공기공급식 호흡용보호구를 착용하시오.
 OSHA Standard 1910.134(29CFR)과 제조업자의 사용 제한점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시오.
- 눈 보호:
 안면보호구가 있는 화학물질용 고글을 착용하시오.
 근로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 세척시설 및 세안 설비를 설치하시오.
- 손 보호: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 신체 보호:
 보호의를 착용하도록 하시오.

9. 물리화학적 특성

가. 외관	백색의 고체
나. 냄새	무취
다. 냄새역치	자료없음
라. pH	자료없음
마. 녹는점/어는점	<165℃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 점 범위	자료없음
사. 인화점	자료없음
아. 증발 속도 (BuAc=1)	자료없음
자. 인화성(고체, 기체)	자료없음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카. 증기압	자료없음
타. 물 용해도	불용
파. 증기밀도(공기=1)	자료없음
하. 비중(물=1)	0.9
거. N-옥탄올/물 분배계수	자료없음
너. 자연발화 온도	375 ~ 400℃
더. 분해온도	자료없음
러. 점도(물=1mm ² /s)	자료없음
머. 분자량	>40,000

10. 안정성 및 반응성

가. 화학적 안정성

상온 상압에서 안정함.

나. 반응 중에 독성물질 발생 가능성

연소 중에 탄소화합물이 발생할 수 있음.

다. 피해야 할 조건

열, 화염, 스파크 및 기타 점화원을 피할 것.

혼합금지 물질과 접촉을 피할 것

라. 피해야 할 물질

산화제, 과산화물

마.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탄소산화물, 알데하이드, 탄화수소류, 케톤류, 탄화수소가스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 호흡기를 통한 흡입: 흡입시 유해함
- 입을 통한 섭취: 경구투입이 거의 어려움
- 피부 접촉: 피부 접촉시 유해함
- 눈 접촉: 눈 접촉시 유해함

나. 단기 및 장기 노출에 의한 지연, 급성 영향 및 만성 영향

- 급성 독성
 - 경구 : LD50>8,000mg/kg Rat
 - 경피 : 자료없음
 - 흡입 : 자료없음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 피부접촉시 자극을 일으킴
-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 눈에 접촉시 자극을 일으킴
- 호흡기 과민성 : 자료없음
- 피부 과민성 : 자료없음
- 발암성 : IARC Group 3
- 생식세포 변이원성 : 자료없음
- 생식독성 : 자료없음
- 표적장기전신독성물질(1회노출) : 흡입시 기도를 자극함
- 표적장기전신독성물질(반복노출): 자료없음
- 흡인유해성 : 자료없음

다. 독성의 수치적 척도(급성 독성 추정치 등)

자료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수생 육생 생태독성

- 어류 : 자료없음
- 갑각류 : 자료없음
- 조류 : 자료없음

나. 잔류성 및 분해성

- 잔류성 : 자료없음
- 분해성 : 자료없음

다. 생물 농축성

- 생분해성 : 자료없음
- 농축성 : 자료없음

라. 토양 이동성

자료없음

마. 기타 유해 영향

자료없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경우 규정에 따라 내용물 및 용기를 폐기하시오

나. 폐기시 주의사항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경우 규정에 명시된 주의 사항을 고려하시오.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유엔 번호

UN 운송 위험물질 분류번호 없음

나. 유엔 적정 선적명

해당없음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해당없음

라. 용기등급

해당없음

마. 해양오염물질

자료없음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

○ 화재시 비상조치의 종류 : 해당없음

○ 유출시 비상조치의 종류 : 해당없음

15.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자료없음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자료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자료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자료없음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해당안됨

○ EU 분류정보

- 확정 분류 결과 : 해당안됨

- 위험 문구 : 해당안됨

- 예방조치 문구 : 해당안됨

○ 미국 관리 정보

- OSHA 규정 (29CFR1910.119) : 해당안됨

- CERCLA 103 규정 (40CFR302.4) : 해당안됨

- EPCRA 302 규정 (40CFR355.30) : 해당안됨

- EPCRA 304 규정 (40CFR355.40) : 해당안됨

- EPCRA 313 규정 (40CFR370.21) : 해당안됨

- EPCRA 313 규정 (40CFR372.65) : 해당안됨

○ 로테르담 협약 물질 : 해당안됨

○ 스톡홀름 협약 물질 : 해당안됨

○ 몬트리올 의정서 물질 : 해당안됨

16. 기타 참고사항

가. 자료의 출처

UN RTDG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NITE http://www.safe.nite.go.jp/data/sougou/pkc_e_search_frm.html
IPCS <http://www.inchem.org/documents/icsc/icsc/eics0559.htm>
IUCLID <http://ecb.jrc.it/esis/index.php?PGM=dat>
ASTDR <http://www.atsdr.cdc.gov/toxprofiles/tp56.html>
KOSHA Material Safety Data Sheet
OECD SIDS Initial Assessment Profile
Westlake CA& O MSDS http://www.westlakechemical.com/_filelib/FileCabinet/pdfs
BOC Gases MSDS <http://www.vngas.com/pdf/g75.pdf>
ACGIH 2008 Guide to occupational exposure values
노동부고시 제2008-26호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나. 최초 작성 일자

2008년 07월 25일

다. 개정 횟수 및 최종 개정 일자

2010년 05월 31일(1차)

2014년 01월 10일(2차) : 도로명 주소 반영

라. 기타

ACGIH: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www.acgih.org)
AIHA : American Industrial Hygiene Association
ANSI :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PI: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CERCLA: Comprehensive Emergency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DOT: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EPA: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www.epa.gov)
HMIS: Hazardous Materials Identification System
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KOSHA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www.kosha.net)
NFPA: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N/A: Not Applicable
NIOSH: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TP: National Toxicology Program
LC50: Lethal Concentration, 50 Percent
LD50: Lethal Dose, 50 Percent
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OPA: Oil Pollution Act of 1990
OSHA :U.S.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dministration
PEL: Permissible Exposure Limit (OSHA)
REL: Recommended Exposure Limit (NIOSH)
RCRA: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RTECS: Registry of Toxic Effects of Chemical Substances(<http://www.cdc.gov/niosh/rtecs/>)
STEL Short-Term Exposure Limit (generally 15 minutes)
SARA: Superfund Amendments and Reauthorization Act of 1986 Title III
SPCC: Spill Prevention, Control, and Countermeasures
TLV: Threshold Limit Value (ACGIH)
TSCA: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WA: Time Weighted Average (8 hr.)
WHMIS: Workplace Hazardous Materials Information System (Canada)(<http://www.whmis.net/>)
WEEL: Workplace Environmental Exposure Level (AIHA)
MOL: Ministry of Labor, Korea